

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상정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원안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2호
의결 년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 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”를 “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”를 “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부천시내”를 “부천시 내”로 하고, “65세이상”을 “65세 이상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“별표”기준에 의한”을 ““별표” 기준에 따른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	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
<p>제1조(목적) <u>지방자치법 제135조</u> 규정에 의거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, 노인들의 생산활동 참여로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한다.</p> <p>제3조(시설) 회관에는 <u>다음 각호의</u>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</p> <p>1.~11. (생략)</p> <p>12. <u>기타</u>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</p> <p>제4조(업무) 회관은 <u>다음 각호의</u> 업무를 행한다.</p> <p>1.~8. (생략)</p> <p>9. <u>기타</u>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p> <p>제5조(위탁운영)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</u>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이용) ① <u>부천시내에</u> 거주하는 <u>65세이상</u>의 시민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44조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시설)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업무)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조(위탁운영) -----</p> <p>----- 「<u>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이용) ① <u>부천시 내</u>-----</p> <p>--<u>65세 이상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기타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</p> <p>제8조(임대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사용료) 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"<u>별표</u>"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 -----제4조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제8조(임대) ----- ----- -----범위 내----- -----.</p> <p>제9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"<u>별표</u>" 기준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<u>필요한</u>----- -----.</p>